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83
----------	-----

2024. 12. 1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11월 14일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1월 26일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특별 휴가 기간 변경
-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 휴가 신설
-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5년 이내) 공직 이탈·방지 및 자기계발, 재충전을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

나. 주요내용

- 공직자 행동률 관련 조항 삭제(안 제5조)
- 근검절약 관련 조항 삭제 및 휴가 기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 해직된 공무원의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 관련 조항 삭제(안 제11조)
- 재직기간 기준 확대(안 제14조)
- 특별 휴가 신설(안 제16조)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일수 확대(별표4)
- 경조사별 휴가 일수 확대(별표5)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 이유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공무원노동조합과³²⁾³³⁾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것임
-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사례 증가, 양육 부담에 따른 저출산 추세와 도내 지자체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 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을 충분하다고 판단됨

32) 2023년 충청교육청노동조합 노사협의회,

- 20. 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기관 근무자의 자기계발휴가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3) 202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청교육청지부 제6회 정책협의회

- 3. 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 기관 근무자의 자기계발휴가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나. 주요 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

- 안 제11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와 중복되어 해직 공무원의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안 제14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과 중복되는 별표4 내용 중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를 삭제하고, 연가가산 대상 민간경력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임
- 안 제15조 2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
- 안 제16조의 재해구호휴가 관련 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개정 사항과 중복되고, 선거 업무 및 투·개표 사무종사자에 대한 휴무 관련 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임
- 안 제17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2항과 중복되는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를 삭제하는 것임
- 별표5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2항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경조사 휴가 문구에 ‘한꺼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을 추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임
- 위의 조항들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라 사료됨

○ 특별 휴가 신설·확대에 관한 사항

- 안 제16조 제7항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각급 학

- 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기계발 휴가에 대하여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자기계발휴가 사용기간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기관 및 학교 근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6조 제9항은 부부 공무원 합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 중 두 자녀 이하의 공무원에게 연간 7일,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연간 12일의 특별 휴가를 제공하고, 연령 제한 없이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2일의 특별 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저출생과 자녀 양육 시간 등에 대하여 문제 등에 대하여 일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세 자녀 이상 공무원과 장애 자녀 공무원의 자녀 양육 휴가 일수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6조 제10항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간 2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4.03.26. 행정안전부의 <정부차원의 사기진작 방안 발표>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내 자치 단체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별도의 문제가 없으며,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저연차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새내기 도약휴가 도입(특별휴가)>

구 분	시행일	대 상	내 용	구 분	시행일	대 상	내 용
충청북도	'24. 9. 27.	5년 미만	연간2일(총10일)	경 기 도	'24. 7. 18.	1년이상 5년미만	총 3일
청 주 시	'24. 4. 5.	1년이상 5년미만	총 3일	경기교육청	'24. 7. 18.	"	총 3일
충청남도	'23. 7. 10.	"	총 3일	인천교육청	'24. 7. 15.	"	총 3일

※ 울산교육청 도입 검토 중

○ 기타 일부 미비 사항에 대한 정비 사항

- 안 제5조는 ‘공무원은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과 안 제7조는 근검·절약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에 포괄적 관련 규정이 담겨 있고, 내용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기타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제3항 및 제6항은 관계 법령명의 변경, 문구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을 “국민의 권익보호”로 한다.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을 “전시·사변·천재지변”으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를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히”를 “무단으로”로, “이탈하지”를 “벗어나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본직기관”을 각각 “원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무원증 발급 등) 공무원증 발급과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4조 중 “2년”을 “5년”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을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전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을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입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거나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각호에 규정한 양육휴가 일수내에서 부부가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두 자녀 이하 공무원: 연간 7일
2.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연간 12일

3. 장애 자녀 공무원: 연간 12일(단, 나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⑩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삭제

별표 5의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	-------------------------------------

별표 5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u>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u>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u></p>	<p>제4조(비밀엄수) ----- ----- ----- ----- <u>사용해서는 안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국민의 권익보호</u> ----- ----- ----- -----</p>
<p>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 <u>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제7조(근검·절약) ① <u>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u></p> <p>② <u>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u></p>	<p><삭 제></p>
<p>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략)</p> <p>② 소속기관의 장은 <u>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u></p>	<p>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전시·사변·천재지변</u> ----- <u>비상사태</u></p>

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가 발생하거나 그 -----
----- 경우 --

-----.

③ ----- 무단으로 ----- 벗어나지 -----
----- 해서는 안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

-- 원 소속기관-----
-----.

② -----

----- 원 소속
기관-----
-----.

<삭 제>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

제12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 따라 -----

----- . -----

----- .

제13조(공무원증 발급 등) 공무원 증 발급과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같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제16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

----- 않도록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
-----.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전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풍해·수해·화재·지진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 4. (생략)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

를」-----

-----.

<삭 제>

⑤ -----
----- 공무원에게 -----

-----.

1. ~ 4. (현행과 같음)

⑥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입영 -----
-----.

⑦ -----

----. <단서 삭제>

는 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생략)

2.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3. (생략)

<신설>

⑧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거나 장애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과 양육휴가 일수 내에서 부부가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두 자녀 이하 공무원: 연간 7일

2.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연간 12일

3. 장애 자녀 공무원: 연간 12일

<신 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
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
가는 결근으로 본다.

(단, 나이 제한을 두지 아니한
다.)

⑩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
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4. 4. 2.]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본조신설 2010. 7. 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2024. 7. 2.>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2019. 4. 1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2024. 7. 2.>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4.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 10. 20., 2024. 7. 2.>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

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20. 10. 20.]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6. 23.]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61호, 2023. 6. 23., 타법개정]

제10조(휴일)

- ①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며, 교육공무직원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한다. 단, 업무특성에 따라 주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5일), 학습휴일(연간 4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③ 특별휴가, 연차, 병가의 사용으로 해당 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12조(특별 휴가)

- ① 교육공무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 ④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⑤ 교육공무직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⑥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자녀가 다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⑦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1. 자녀가 5세 이하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2. 자녀가 생후 1년 미만인 경우 1일 1시간

⑧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군 입영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각급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1년(둘째자녀 이후 전체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 기간은 포함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10일

⑪ 각급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일 이전 1년 이내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퇴직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1년(둘째자녀 이후 전체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기간은 포함한다. <신설 2023. 1. 27.>

1. 재직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15일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원은 1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교육공무직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